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853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4. 16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4. 4. 20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4. 10. 8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2. 제정사유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학교급식조례제정고성연대 상임대표 안태완(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221번지)외 1,517인으로부터 제정청구된 조례로서
- 친환경 농산물등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
- 학교급식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계층 및 소득의 차별없이 균형잡힌 식사를 함으로써 건전한 식습관 형성은 물론 우리의 전통음식문화를 계승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

3. 주요골자

- 용어의 정의에 관한사항(안 제2조)
- 자치단체의 임무(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안 제7조)
- 지정판매업자의 신청의무(안 제8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학교급식조례제정 고성연대 상임대표 안태완외 1,517인으로부터 제정청구된 조례로서, 학교급식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하고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학교급식에 국내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03.12.30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 군수도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 지원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 본 조례안중 제1조, 제2조제2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4호,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에 명시된 “학교급식을 국내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만 사용” 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래와 같이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을 벗어난 규정으로 타 회원국들로부터 제소당할 위험성이 있을뿐 아니라, 또한 헌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간에 체결된 협정(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는 규정에 따라 WTO협정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할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례로 생각되고,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고 신중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

< WTO협정 위반사항 >

- 학교급식에 국내와 우리지역 농·수·축산물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

⇒ 상품무역에 있어서 내·외국산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와 제24조 및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제3조 위반

- 국내와 우리지역 농·수·축산물 사용을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규정
⇒ 수입품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와 국내농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감축하도록 하는 「농업에 관한 협정」 제6조의 규정 위반

5. 질의 및 답변

- 문 : 본 조례안이 WTO협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면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 답 : 예, 알겠습니다.
- 문 : 지난 9월 16일자 고성신문에 본 조례가 의결되지도 않았는데 학교급식관련 예산 6억원이 보도되는 등 사전에 기사가 나온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 사천시에서 기사가 보도된 내용을 각종 자료를 추정하여 우리군에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 안 제2조제2호 우수 농·수·축산물 용어정의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은가?
- 답 : 국내 우리 농·수·축산물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유 등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로 용어 정의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6. 토 론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조례안 명칭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고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 변경
- 안 제3조의 제목 “자치단체의 임무”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으로 하고, 안 제5조의 제목 “지원방법”을 “우수 농·수·축산물사용”으로 하며, 안 제7조의 제목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설치”로 함.
- 안 제10조의 제목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급식학교의 의무”로 하고, 안 제10조의 2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
- 그외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국무조정실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각 조문내용 중 일부 불합리하거나 관련법 및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삭제 또는 수정

8. 심사결과

- 2004. 10. 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덧붙임 :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1부

고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지역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몸과 건전한 마음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식품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제2조 규정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 2.“우수 농·수·축산물”이라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하여 인증된 농산물을 말한다
- 3.“지정판매업자”라 함은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판매업자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 4.“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5. “식품비”라 함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 가공,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성군 내에 있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로 한다.

제5조(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①군수 및 학교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군수는 학교급식 경비분담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③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접 또는 고성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학교는 고성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및 내역, 방법, 지정판매업자의 선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수산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2. 고성교육청 학무과장
3.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
4. 고성군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1인
5. 학부모단체 2인
6. 교사단체 2인
7. 농·수·축산인단체 3인
8. 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
9. 관련 전문가 1인
10.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인

③위원회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기타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지정판매업자의 신청) 지정판매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판매업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판매시설의 위치와 규모
3. 주요 취급 식재료의 현황 및 품목의 수량
4. 군수가 요구하는 필요한 사항
5. 기타 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정판매업자의 의무) ①지정판매업자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지정판매업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우수 농·수·축산물 공급내역을 매월 말 기준 작성하여 다음 달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정기적으로 지정업자의 판매내역에 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군수는 지정판매업자가 제2항의 의무를 해태 하거나 제3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업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0조(급식학교의 의무) ①식품비를 교부 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급식학교의 장은 매년 식품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학교의 장은 고성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2(지도·감독) ①군수는 지원된 식품비 사용 보고 내역을 검토하여 식품비 지원금의 목적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고성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